KB자산운용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 안내

다음과 같이 신탁계약서 및 투자설명서(간이투자설명서 포함) 변경을 안내해 드립니다.

1. 대상 펀드 및 변경 내용

- KB RISE 코스닥 150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7. 생략	1. ~ 7. 좌동
	8.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설) 8.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②생략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u>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u>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
		<u>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u>
		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u>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u>
		(신설)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u>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u>
신탁계약서		<u>동화증권"이라 한다)</u>
		(신설) 10.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
		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
		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
		<u>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u>
		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
		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
		<u>하 "어음"이라 한다)</u>
		<u>11.</u>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3. 생략	1. ~ 3. 좌동
	4. 제1호에 따른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	4. (삭제)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20%이하로 한다.
	5. ~ 6. 생략	5. ~ 6. 좌동
		(신설) <u>7.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u>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 다.

(신설) 8.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10.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 액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 로 본다. 다만,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 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 는 지수에 연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 투자기구의 경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 이 3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 권에 투자할 수 있다.

3. ~ 7.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 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 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지수에 연 동하여 운용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경 우 동일종목이 차지하는 비중이 30%를 초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종목이 지수에서 차지하 는 비중까지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3. ~ 7.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 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 호, 제2호, 제6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 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 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 5. 생략
- ③제19조 제2호, 제3호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
- ④생략

-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 으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의 규정을 | 로 제18조 제1호, 제2호, 제6호 및 제8호 내 지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및 제7호, 제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 터 3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 나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 5. 좌동
 - ③제18조 제7호, 제19조 제2호, 제3호 및 제5 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 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④ 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 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 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수익률 변동성: 21.64%

수익률 변동성: 59.78%

투자설명서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KB RISE ESG 사회책임투자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사회책임투자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생략	1. ~ 6. 좌동
	7.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설) 7.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②생략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u>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u>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
		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u>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u>
		<u>동화증권"이라 한다)</u>
		(신설) 9.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신탁계약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
		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u>"어음"이라 한다)</u>
		<u>10.</u>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5. 생략	1. ~ 5. 좌동
		(신설) 6.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
		<u>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u>
		<u>다.</u>
		(신설) <u>7.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u>
		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3. ~ 7.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 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 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 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7.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

	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	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
	하게 되는 경우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u>제6호</u> , 제
	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1. ~ 5. 좌동
	③제19조 제2호, 제3호 가 목 및 제5호의 규	③ <u>제18조 제6호,</u> 제19조 제2호, 제3호 가 목
	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	및 제5호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
	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생략	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
		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
		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
		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수익률 변동성: 16.97%	수익률 변동성: <u>38.01%</u>
티카서며니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KB RISE 고배당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신탁계약서	1. ~ 6. 생략	1. ~ 6. 좌동
	7.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설) 7.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생략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 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 동화증권"이라 한다)

(신설) 9.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1. ~ 3. 생략
- 4. 제1호에 의한 증권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 5.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 1. ~ 3. 좌동
- 4. 제1호 <u>및 제7호 내지 제9호</u>에 의한 증권 의 차입은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20%이하로 한다.
- 5. 좌동

(신설)6.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매매에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에서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다.

(신설) <u>7.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u>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u>8.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u> 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u>9.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u> 의 40%이하로 한다.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예금은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 로 본다.
- 3. ~ 5.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 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 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8 하게 되는 경우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좌동
-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 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 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5. 좌동

제1호,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8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u>제6호 및</u>
	19조 제2호, 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투자한	제19조 제2호 <u>내지</u>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개월까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지 (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집합투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니하고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그 처분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적합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1. ~ 5. 좌동
	③제19조 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은 투자신탁	③ <u>제18조 제6호,</u> 제19조 제2호 및 제3호의
	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
	니한다.	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생략	④ 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
		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
		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
		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
		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위험등급: 3등급(다소 높은 위험)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투기서머니	수익률 변동성: 14.60%	수익률 변동성: <u>34.95%</u>
투자설명서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	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KB RISE Fn5G테크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생략	1. ~ 6. 좌동
	7.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설) 7.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실 신탁계약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선탁계탁시	②생략	<u>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u>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
		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 동화증권"이라 한다)

(신설) 9.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 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6.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6. 좌동

(신설) 7.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3. ~ 7. 생략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 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 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 |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 │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 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 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 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③~④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3. ~ 7. 좌동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6호, 제 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 1. ~ 5. 좌동
- ③~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 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 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 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수익률 변동성: 23.59%	수익률 변동성: <u>58.49%</u>
트리셔머니	위험등급: 2등급(높은 위험)	위험등급: 1등급(매우 높은 위험)
투자설명서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	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KB RISE Fn수소경제테마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생략	1. ~ 6. 좌동
	7.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설) 7.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②생략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
		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
신탁계약서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u>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u>
		<u>동화증권"이라 한다)</u>
		(신설) 9.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
		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u>"어음"이라 한다)</u>
		<u>10.</u>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6. 생략

1. ~ 6. 좌동

(신설) 7.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3. ~ 7.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 탁증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 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여 동 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 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7.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 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 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 |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 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
	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	로 제18조 제1호 <u>,</u> 제2호 <u>및 제7호 내지 제9호</u>
	하게 되는 경우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u>제6호</u> , 제
	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1. ~ 5. 좌동
	③~④생략	③~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
		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
		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
		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수익률 변동성: 24.94%	수익률 변동성: <u>46.25%</u>
투자설명서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	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구시 같이시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KB RISE IT플러스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생략	1. ~ 6. 좌동
	7.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설) 7.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신탁계약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②생략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

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 동화증권"이라 한다)

(신설) 9.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 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5.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5. 좌동

(신설) 6.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 다.

(신설) 7.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 로 본다.

3. ~ 7.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 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 하게 되는 경우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4호, 제 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예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 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 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7.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제1호,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 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6호 내지 제9호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 | 19조 제2호 내지 제5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I
	1. ~ 5. 생략	1. ~ 5. 좌동
	③제19조 제2호, 제3호 가 목의 규정은 투자	③ <u>제18조 제7호,</u> 제19조 제2호, 제3호 가 목
	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u>및 제5호</u> 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
	아니한다.	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생략	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
		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
		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
		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수익률 변동성: 19.85%	수익률 변동성: <u>43.69%</u>
트기서대니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KB RISE 2차전지액티브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생략	1. ~ 6. 좌동
	7.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설) 7.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②생략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
		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신탁계약서		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u>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u>
		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
		<u>동화증권"이라 한다)</u>
		(신설) <u>9.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u>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 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6.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6. 좌동

(신설) 7.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 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 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또는 해외 증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10%를 초과하 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가.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그 법인 등이 발행한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 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시가 |총액이 10%를 초과하는 경우에 그 시가총액 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비중까지 투자하는 경우. 이 경우 시가총액비

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권시장 별로 매일의 그 지분증권의 최종시가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 간 적용한다.

3. ~ 7. 생략

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 중은 거래소가 개설하는 시장 또는 해외 증 의 총액을 그 시장에서 거래되는 모든 종목 의 최종시가의 총액을 합한 금액으로 나눈 비율을 1개월간 평균한 비율로 계산하며, 매 월 말일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그 다음 1개월 간 적용한다.

> 나.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 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7. 좌동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 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 로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 하게 되는 경우
- ②~④생략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 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급의 최초하락일 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간"이라 한다) 이 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 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 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투자설명서	책임운용전문인력: 김동환/강은표	책임운용전문인력: 김동환/ 봉철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도진/봉철우	부책임운용전문인력: 이도진/ 강은표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	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설정 후 3년 미경과	

- KB RISE 게임테마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

구분	변경전	변경후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6. 생략	1. ~ 6. 좌동
	7.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설) 7.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②생략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u>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u>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
		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u>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u>
		(신설) 8.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
신탁계약서		<u>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u>
		<u>동화증권"이라 한다)</u>
		(신설) <u>9.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u>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
		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
		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
		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u>"어음"이라 한다)</u>
		10.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78.6	②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5. 생략	1. ~ 5. 좌동
		(신설) 6. 장내파생상품에의 투자는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투자신탁 자산총

액에서 부채총액을 뺀 가액의 10%이하로 한

(신설) 7.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8.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 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9.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 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생략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예금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 로 본다.

3. ~ 7. 생략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 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 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 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7. 좌동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제1호, 제2호 및 제7호 내지 제9호의 규정은 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 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 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 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 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하는 경우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
	으로 제18조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위반	로 제18조 제1호 <u>,</u> 제2호 <u>및 제7호 내지 제9</u>
	하게 되는 경우	<u>호</u> 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제5호, 제	로 불가피하게 제18조 제3호 내지 <u>제6호</u> , 제
	19조 제2호 내지 제4호에 따른 투자한도를	19조 제2호 내지 <u>제5호</u> 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초과하게 되는 경우에는 초과일부터 3개월까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지(부도 등으로 처분이 불가능하거나 집합투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자재산에 현저한 손실을 초래하지 아니하고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는 처분이 불가능한 투자대상자산은 그 처분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이 가능한 시기까지)는 그 투자한도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것으로 본다.
	1. ~ 5. 생략	1. ~ 5. 좌동
	③제19조 제2호, 제3호 가 목의 규정은 투자	③ <u>제18조 제6호,</u> 제19조 제2호, 제3호 가 목
	신탁의 최초설정일부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u>및 제5호</u> 의 규정은 투자신탁의 최초설정일부
	아니한다.	터 1개월까지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④생략	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7호 및 제9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
		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등
		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
		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수익률 변동성: 30.63%	수익률 변동성: <u>63.06%</u>
트리셔머니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	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KB RISE 미국반도체NYSE 증권 상장지수 투자신탁(주식)(H)

구분	변경전	변경후
신탁계약서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제17조(투자대상자산 등) ①

1. ~ 7. 생략

8.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생략

1. ~ 7. 좌동

(신설) 8. 법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국채 증권, 지방채증권, 특수채증권(법률에 의하여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말한다), 사채권(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이상이어야 하며, 주식관련사채권, 사모사채권, 자산유동화 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유동화계획에 따라 발 행하는 사채 및 한국주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주택저당채권담보부채권 또는 주택 저당증권은 제외한다)(이하 "채권"이라 한다) (신설) 9. 자산유동화에관한법률에 의한 자산 유동화계획에 따라 발행되는 사채 및 한국주 택금융공사법에 따라 발행되는 수택저당채권 담보부채권 또는 주택저당증권(이하 "자산유 동화증권"이라 한다)

(신설) 10. 기업어음증권(기업이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하는 약속어음으로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것), 기업어음증권을 제외한 어음 및 양도성예금증서(양도성예금증서를 제외하고는 취득시 신용평가등급이 A2 이상이어야 한다)(이하 "어음"이라 한다)

11. 법 시행령 제268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및 제4조의2에 의해 지정된 해외보관대리인 고유재산과의 거래

② 좌동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7. 생략

제18조(투자대상자산 취득한도)

1. ~ 7. 좌동

(신설) <u>8. 채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u>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u>9. 자산유동화증권에의 투자는 투자신</u> 탁 자산총액의 40%이하로 한다.

(신설) <u>10. 어음에의 투자는 투자신탁 자산총</u> 액의 40%이하로 한다.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제19조(운용 및 투자 제한)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재산을 운용함에 있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신탁업자에게 지시할 수 없다. 다만, 법령 및 규정에서 예외적으로 인정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생략
-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3. ~ 10. 생략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제20조(한도 및 제한의 예외)** 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제4호 및 제5│규정은 그 투자한도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 으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을 위 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생략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좌동

2.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를 초과하여 |동일종목의 증권(집합투자증권을 제외하되,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원화 로 표시된 양도성예금증서, 기업어음증권 외 의 어음, 대출채권·예금·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투자하는 행위.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 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 종목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각 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30%를 초과하 여 동일종목 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

> 가. 국채증권,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 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까지 투자하는 경우

3. ~ 10. 좌동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만, 다음 제4호 및 제5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투자비율을 위반한 날부터 15일 이 내에 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 1. 투자신탁 최초설정일부터 1월간
- 2. 투자신탁 회계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3. 투자신탁 계약기간 종료일 이전 1월간
- 4. 3영업일 동안 누적하여 추가설정 또는 해지 청구가 각각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를 초과 하는 경우
- 5. 투자신탁재산인 증권 등 자산의 가격변동으 로 제18조 제1호 내지 제3호 및 제8호 내지 제10호의 규정을 위반하게 되는 경우

②~④좌동

(신설) ⑤투자대상 자산의 신용등급이 제17조 제1항 제8호 및 제10호에서 정한 신용등급 미만으로 하락한 경우 해당자산을 신용평가 등급의 최초하락일로부터 3개월(이하 "처분기

		간"이라 한다) 이내 처분하는 등 투자자보호
		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처분기간 이내에 해당자산의 처분이 어려운
		경우에는 신탁업자와 협의하여 처분기간 연
		장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여야 한다.
	※ 신탁계약서 변경에 따른 투자설명서 변경	
투자설명서	※ 정기갱신(기타비용/증권거래비용, 집합투자	기구 재무정보/운용실적 등 업데이트)에 따른
	변경 포함	
	※ 위험등급 변경 없음	
	※ 설정 후 3년 미경과	

2. 변경(예정)일: 2025년 03월 07일(금)